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

제출년월일 : 1994. 6.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 안 사 유

- 상수도 수요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장등 상수원 개발사업이 시급한반면 현재의 급수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공기업 운영상 적자를 보게하므로 요금을 최소한 인상하여 이를 보전하고, 조례상 일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항과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함을 물론, 상수도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수도요금은 '93 공기업 경영진단 분석결과 발생한 인상요인(9.7%) 범위내로 인상
· 업종별 요금표 : 따로붙임
- 상수도공사시행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
- 일부 용어개정 : 현행 "가정용2종"을 "가정용"으로 고침
- 가구분할신고자 요금할인 적용시기의 명문화 — 가구분할 신고한 다음달 부터 적용토록 규정
- 모범업소 및 거택보호자등 요금감면 규정의 명문화
(모범업소는 수도요금의 30% 감면, 거택보호자는 기본요금 전액감면 등)
- 수도요금 이의신청 처리기간 조정 — 현행 60일을, 30일로 처리기간 단축

3. 참 고 사 항

- 입법예고 : '93. 12. 4 ~ 12. 23 (공고 제93-180)
-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 '94. 6. 10
- 시정조정 위원회 심의 : '94. 6. 13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1년이내에”를 “3년이내에”로 한다.

제26조(요금) 제1항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제2항중 “가정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가정2종”을 “가정용”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가구분할 신고를 필한 수도요금 할인적용 시기는 가구분할 신고를 필한 다음달 수도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중 “인정한때” 다음에 “다음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생활 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가구는 기본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②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 ③ 기타 시장이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기관, 단체, 업소의 요금 및 수수료를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중 “6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책임) ① (생략)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책임) ① (생략)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3년 이내에	② 3년 이내에	
제29조 (사용수량의인정) ① (생략)	제29조 (사용수량의인정) ① (생략)	제29조 (사용수량의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2종과 다른 업종이 함께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가정용과	② 가정용과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2종에관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양으로 한다. 이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가정용에관	③ 가정용에관	
		단, 가구분할 신고를 필한 수도요금 할인 적용시기는 가구분할 신고를 필한 다음달 수도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37조 (요금등의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 (요금등의감면) 요금및 수수료를 <u>다음에 의하여</u> 감면할 수 있다.	
	(신설)	① 생활보호 대상자중 저택보호가구는 기본요금에 한하여 전액감면할 수 있다.	
	(신설)	② 공중위생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신설)	③ 기타 시장이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기관, 단체, 업소 요금및 수수료를 30% 범위내에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 (이의신청) ① (생 략)		제44조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30일이내	

[별표2]

업종별요금표

업종별		단 계 별		현행	개정	비고
가정용		기본	0 - 10 톤	1,350	1,500	
		초과	11 - 30 톤	100	110	
			31 - 50 톤	220	230	
			51 톤 이상	230	400	
영 업 용	1 종	기본	0 - 10 톤	6,500	7,100	
		초과	11 - 50 톤	450	480	
			51 - 100 톤	480	520	
			101 - 300 톤	520	570	
			301 톤 이상	530	600	
	2 종	기본	0 - 30 톤	10,100	11,000	
		초과	31 - 50 톤	470	500	
			51 - 100 톤	620	670	
			101 톤 이상	690	750	
목 탕 용	1 종	기본	0 - 200 톤	61,450	66,400	
		초과	201 - 300 톤	420	460	
			301 - 500 톤	470	510	
			501 톤 이상	630	700	
	2 종	기본	0 - 200 톤	81,700	90,000	
		초과	201 - 300 톤	700	770	
			301 - 500 톤	960	1,050	
			501 톤 이상	1,200	1,300	
공공용		기본	0 - 30 톤	7,500	8,100	
		초과	31 톤 이상	410	450	
전용공업용		톤 당		300	350	